

[헬스장 및 개인트레이너 관련 계약해지]

헬스장 (및 PT서비스) 이용계약 해지 통지서

◎ 수신인 : 00휘트니스클럽 대표이사 ○ ○ ○
서울시 강남구 청담동
02-123-456

◎ 발신인 : 소시모
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
010-1234-4567

계약일자 : 20 년 월 일
계약금액 : 000,000원 (카드 개월 할부 결제)
계약내용 : 0개월(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)
(personal training service 회)

계약해지사유

-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0 년 월 일 귀사와 *개월간(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) 헬스장이용 (또는 PT(personal training service) 회) 계약을 체결하고, 대금 000,000원을 신용카드로 개월 할부(또는 현금) 결제하였습니다.
- 그러나, 본인은 갑작스런 이사로 인하여 (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) 더 이상 귀사의 헬스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.
-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(우체국에 가는 날짜를 씁니다.) 년 월 일

(위의 발신인과 같은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.)상기 계약자: (인)

※ 첫 장의 작성이 끝나면 동일한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총 3매를 작성합니다.